

『정보통신산업동향』은 정보통신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 제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http://www.kici.re.kr>)에서 발간하는 이슈 및 동향 분석 연구지입니다.



## 정보통신공사 표준도급 및 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향

표준연구실 표창균 책임연구위원

capyo@kici.re.kr

### I. 배경 및 필요성

-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는 점차 대형화되고 세부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발주자와 원도급자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며, 건설공사의 특성상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부의 경제적 환경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적 요인 변화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계약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변화나 의견충돌을 조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종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써 대부분 당사자 간의 자율적 의사와 방식에 기초하여 계약이 체결됨.
- 이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분쟁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의 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음.

## II. 건설분쟁 사례 및 표준계약서 문제점

□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분쟁 사례를 단계별로 분쟁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식별됨.

[표 1] 건설분쟁 단계별 원인 식별 결과

단계	분쟁 원인	건수	비율	빈도 순위
설계	입장 차이에 따른 이해관계 대립	3	50.0%	1
	잘못된 의사전달 방법	1	16.7%	2
	불명확한 판단기준	1	16.7%	2
	분쟁을 유발하는 행동양식	1	16.7%	2
계약	불명확한 판단기준	7	53.9%	1
	분쟁을 유발하는 행동양식	2	15.4%	2
	조직 간의 대립	1	7.7%	3
	입장 차이에 따른 이해관계 대립	2	15.4%	2
	불분명한 책임과 권한의 경계	1	7.7%	3
시공	불명확한 판단기준	29	33.3%	1
	입장 차이에 따른 이해관계 대립	23	26.4%	2
	합의를 위한 협의시간 부족	13	14.9%	3
	분쟁을 유발하는 행동양식	7	8.1%	4
	잘못된 의사전달 방법	6	6.6%	5
	미해결된 원한 관계	2	2.3%	6
	불분명한 책임과 권한의 경계	2	2.3%	6
	과거 불명확한 판단기준으로 인한 미해결된 원한	2	2.3%	6
	과거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미해결된 원한	1	1.5%	7
	조직간의 대립	2	2.3%	6



□ 민간 건설분야 표준계약서 활용시 문제점은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로 지체상금분야를 비롯하여 공사감독원의 전문성, 계약내용 변경, 불가항력에 대한 모호한 범위 등 수급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였음.

[표 2] 민간 건설 표준도급계약서 문제점 요약

구분	문제점	주요 내용
지체상금	발주자의 사용 승인 취득 후 준공 검사 지연	- 건축주가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득한 경우에도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준공 지연 - 이로 인하여 지체상금이 발생되고 수급인의 금전적 피해 발생
	지체상금률 수준의 임의성	- 현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과도한 지체상금률을 약정하거나 지체상금률 기준을 누락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다수 -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1/1,000의 지체상금률 불인정
공사 감독원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사감독원 선임	-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공사 및 설계 변경 등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을 요구·지시 - 이러한 요구·지시에 의하여 부적합한 공사 발생시 공사감독원은 시공자에게 책임 전가
	수급인의 불명확한 책임 면제 사유	- 부적합 시공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면제 사유가 추상적으로 명시됨. - 공사 감독원 등의 요구·지시에 의한 부적합한 시공 발생시 건설기업의 책임 면제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계약 변경	변경 계약서의 교부 의무 불이행	-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서는 설계 변경 등 공사 내용이 변경·추가하거나 중지될 경우에 시공업체에 변경 계약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음. - 발주자의 공사 계약 금액 조정의 불인정 및 변경 계약서 교부의 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
불가항력의 개념 해석	'불가항력' 개념의 불명확	-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17조, 19조, 27조, 30조, 31조에서 불가항력 개념을 사용 -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에서만 '불가항력'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뿐 타 조항의 준용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수급인 보호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수급인 보호 조항 부재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계약 부분 무효 명시(2013. 8) -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아직 명시되지 않고 있음.
	하자 판정 및 조사 방법 등에 관한 처리 원칙 부재	- 민간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 명확한 하자 판정 및 조사 방법, 비용 산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한 분쟁이 민간 건설공사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

출처 : 민간 건설공사의 공정 계약체결 유도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9)

- 따라서, 표준도급계약서의 불명확 및 불합리 조항의 개선하고자, 지체상금을 수준의 구체적 명시, 부적합 시공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면제 사유의 명확화하는 부분, '불가항력' 의 개념 및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분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공사 감독원 선임시 자격 기준의 명확화 및 책임을 부여하고, 하자 판정 및 조사 방법 등에 관한 처리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고, 계약 해지 사유에 발주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요망됨.

### III. 정보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방향

- 정보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방향은 먼저 관계법령에 제시된 근거를 중심으로 주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요구되는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하여야 함.

#### ○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2876호, 2014.12.30, 일부개정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4.29.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 이상의 법률 외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시행령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도급계약서 구성과 제정안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표 3]과 같이 정보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조문을 구성함.

[표 3] 표준도급계약서 조문 구성

제1조(총칙)	제1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29조(대금지급)
제2조(정의)	제16조(근로자의 보호)	제30조(폐기물의 처리 등)
제3조(법령의 준수)	제17조(응급조치)	제31조(지체상금)
제4조(계약문서)	제18조(공사기간의 연장)	제32조(하자담보)
제5조(계약보증금)	제19조(부적합한 공사)	제33조(공사의 하도급 등)
제6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제20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7조(공사감독원)	제21조(공사의 변경·중지)	제35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제8조(현장대리인의 배치)	제22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6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제9조(공사현장 근로자)	제2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7조(계약해지시의 처리)
제10조(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제24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8조(수급인의 동시 이행 항변권)
제11조(공사기간)	제25조(기성부분금)	제39조(채권양도)
제12조(선급금)	제26조(손해의 부담)	제40조(손해배상책임)
제13조(자재의 검사 등)	제27조(부분사용)	제41조(분쟁의 해결)
제14조(지급자재와 대용품)	제28조(준공검사)	제42조(특약사항)

□ 또한, 기 제정된 민간건설공사, 민간 문화재수리, 소방시설업, 민간 전기공사 등 타 공종 표준도급계약서의 조문 구성과 비교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음([표 4] 타공종간 표준도급계약서 조문비교표 참조).

[표 4] 타 공종간 표준도급계약서 조문비교표

구분	민간건설공사	민간 문화재수리	소방시설업
총칙	제1조(총칙)	(좌동)	(좌동)
정의	제2조(정의)	(좌동)	(좌동)
관계법령 준수	제40조(법령의 준수)	(좌동)	(좌동)
계약문서	제3조(계약문서)	(좌동)	
계약보증금	제4조(계약보증금)	(좌동)	(좌동)
계약보증금의 처리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좌동)	(좌동)
보증인		제6조(연대보증인의 자격)	제29조(보증인)
감독원배치	제6조(공사감독원)	제7조(문화재수리감독원)	제6조(공사감독원)
현장대리인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좌동)	제7조(소방기술자의 배치)
현장근로자	제8조(공사현장 근로자)		
착수 및 공정	제9조(착공신고 및 공정 보고)	제9조(착수신고)	제8조(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산출내역서)
공사기간	제10조(공사기간)	제10조(수리기간)	
선금금	제11조(선금)	(좌동)	(좌동)
자재검사 등	제12조(자재의 검사 등)	(좌동)	(좌동)
지급자재와대여품	제13조(지급자재와 대여품)	(좌동)	(좌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 보상)	(좌동)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근로자의 보호	제15조(근로자의 보호)	(좌동)	
응급조치	제16조(응급조치)	(좌동)	(좌동)



공사기간의 연장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제17조(수리기간의 연장)	제14조(공사기간의 연장)
부적합한 공사	제18조(부적합한 공사)	제18조(부적합한 문화재수리)	제15조(부적합한 공사)
공사기간의 연장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좌동)	(좌동)
공사의 변경·중지	제20조(공사의 변경·중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좌동)	(좌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좌동)	(좌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좌동)	(좌동)
기성부분금	제24조(기성부분금)	(좌동)	(좌동)
손해의 부담	제25조(손해의 부담)		
부분사용	제26조(부분사용)	(좌동)	(좌동)
완공검사	제27조(준공검사)	(좌동)	제22조(완공검사)
완공검사	제28조(대금지급)	(좌동)	(좌동)
폐기물의 처리 등	제29조(폐기물의 처리 등)	(좌동)	
지체상금	제30조(지체상금)	(좌동)	(좌동)
하자보수	제31조(하자담보)	(좌동)	(좌동)
공사의 하도급 등	제32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제30조(문화재수리의 하도급 등)	제26조(공사의 하도급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3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좌동)	
발주자의 계약해지 등	제34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제32조(발주자의 계약해제 등)	

수급인의 계약해지 등	제35조("수급인"의 계약 해제 등)	(좌동)	
계약해지시의 처리	제36조(계약해지시의 처리)	(좌동)	제2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제37조(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채권 양도	제38조(채권양도)	(좌동)	제30조(관리의무의 양도)
손해배상책임	제39조(손해배상책임)	(좌동)	(좌동)
분쟁의 해결	제41조(분쟁의 해결)	(좌동)	(좌동)
손해배상책임	제39조(손해배상책임)	(좌동)	(좌동)
특약사항	제42조(특약사항)	(좌동)	(좌동)

## IV.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방향

-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12.31. 개정하여 공표한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 제기된 개정요구와 관련 민원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사항을 도출하였음.
- 매년 실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계약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조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은 전체 64%로 확인되었음.
- 아울러, 하도급관련 불공정 행위중 개선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①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금액, ②하도급 대금 지급 시 현금 이외의 어음발행, 대물변제



등을 통한 결제행위, ③하도급법령 등 관련법령의 미 준수, ④민원처리 및 제반비용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조건 순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사되었음.

□ 따라서,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해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음.

[표 5] 불공정 하도급방지관련 개정 조항 현황

구 분	하도급계약서 관련 조항
①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금액	제19조 (계약금액 등의 결정),
②하도급 대금 지급 시 현금 이외의 어음발행, 대물 변제 등을 통한 결제행위	제20조 (지급보증 등) 제25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③하도급법령 등 관련법령의 미 준수	제6조 (하도급계약 승낙) 제46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④민원처리 및 제반비용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조건	제5조 (특약설정) 제22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32조 (손해부담)

□ 또한, 공사업체 심층면접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하였으며,

○ 현장대리인에 대한 자격조건 명시 (제 2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자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모두 해당 공사부분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함.

- 정보통신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유권해석결과, 하도급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각자의 시공분야에 대한 현장대리인(정보통신기술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는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대리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상주 배치되어야함.
- o 공사감독원의 자격 근거 마련(제 11조)
  - 현재 공사감독원에 대해 자격 근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도급인이 감독원을 선임할 경우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독업무 수행 유경험자로서 공사감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함.
- o 지체상금 현실화 반영(제 30조)
  - 공사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시 하도급대금(또는 예치금)에서 공제하도록 현실화 반영함.
- o 원사업자 협조시 관련 법과 관련 기술을 현실화 반영 (제 41조)
  -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을 보완함.



## V. 정보통신공사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사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관련 최초의 표준화된 도급계약서 보급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정보통신공사의 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금번 표준계약서 제·개정 연구를 통해 민간분야 정보통신공사에서 활용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가 제정됨.
  
-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관련 불공정한 관행 해소 기대
  -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원도급자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 권장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업계 특수성에 맞게 개정하여 불공정 관행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 지속적인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하도급관련 불공정요소 해소 노력 필요
  - ICT환경의 변화, 공사현장에서의 실태 등 지속적인 상황변화와 관련 법규 제개정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개정소요를 반영하여 불공정요소가 해소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정보통신공사 및 관련 공사 부문 북한 진출 현황과 시사점

기획관리실 김희정 책임연구위원

hkline@kici.re.kr

## I. 서론

- 남북 분단 이후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으나 통일은 변함없는 국민의 희망이자 국가정책의 화두이며,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과 논의가 사회 각계에서 지속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 부문은 통일 이후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화와 ICT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기반을 수립하고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본고에서는 공사업계 차원의 통일 대비 및 대정부 건의 정책마련을 위해 정보통신공사 및 관련 공사 부문의 북한진출 현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II. 건설공사

- 북한지역 건설분야의 선결과제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사회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농림수산업 기반시설,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주택건설 등으로 나타남(박용석, 2012)
  
- 남북한 건설공사 협력사례
  - 2004년 이전의 남북한 건설공사 협력은 사회문화 협력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경제 협력사업이 급증
    - 1991~2003년에는 전체 건수 기준으로 남북한 협력사업 중 사회 문화 협력사업이 69.4%에 달하였으나, 2004~2009년에는 경제협력사업이 74.9%를 차지
  
  -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사업에서 파생된 건설공사
    - (2003, 현대건설 시공) 평양 유경 정주영체육관 공사
    - (2010, 인정건설 시공) 평양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공사
  
  - 남북한 민간경제 협력사업에서 파생된 건설공사
    - (1996, 대우건설과 북한 삼천리총회사 시공) 남포공단 민족산업총회사 공사
    - (현대아산 시공) 금강산관광지구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이산가족 면회소, 옥류관 공사
    - (2002, 평화토건) 남포공단 평화자동차 공장

○ SOC사업에서 파생된 건설공사

- (1996, 대우건설과 북한 삼천리총회사) 남포공단 민족산업총회사 공사
- (현대아산) 금강산관광지구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이산가족면회소, 옥류관 공사
- (2002, 평화토건) 남포공단 평화자동차 공장

□ 철도건설공사

○ 대륙연계철도 사업 추진: 철도공사는 포스코·현대상선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러시아철도공사를 대상으로 “나진-하산 물류사업” 를 공동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 철도는 북한의 운송부담률에서 약 86%를 차지하는 중요한 운송 인프라로 통일 이후 주요 과제는 북한 철도구간의 현대화와 남북철도 연결로 나타남

※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철도 분야에서 개량이 시급한 사업으로는 평라선 고원~순천 간 165.3km 복선화 개량(5조 6,749 억 1,600만원), 개천선 신안주~개천 간 29.1km 복선화 개량(9,489억 4,000만원), 만포선 순천~개천 간 38.9km 복선화 개량(1조 3,345억 4,800만원), 만포선 개천~만포 간 264.5km 단선 개량(6조 1,760억 4,800만원)이 있으며, 개량에 총 14조 1,344억 5,2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전기신문, 2015)

□ 북한에서의 SOC 시설 수요 발생 시 건설공사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건설공사업은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는 직접적 역할 뿐 아니라 건설과정에서 북한주민의 고용증대 및 북한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향후 북한에서의 본격적인 건설사업 추진 시 건설장비 및 자재 등의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남한에서의 장비 및 자재 수송과 더불어 북한 내에서 이용가능한 자재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건설공사업계 통일 대비 연구
  - 건설공사업계의 통일 대비 및 북한관련 연구는 주로 북한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건설협력 경험을 통해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건설수요 유형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표 1〉 참조)

[표 1] 건설공사업계 통일대비 연구 현황

저자 정보	제목	주요 내용
박용석 (2010)	남북한 건설 분야 협력 사례 분석과 북한 내 산업단지 개발방안	○ 사례분석 및 수요추정 ○ 북한 내 6개 단지 건설수요추정 및 경험 활성화 필요성 촉구
박용석 (2012)	북한 경제 및 건설시장에 관한 기초연구	○ 북한현황 및 독일통일사례 조사 ○ 건설수요의 장단기 유형 분류
박용석 (2014)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	○ 북한경제특구 동향조사 ○ 5.24조치 재검토, 건설수요추정 기존조사 요약 등 정책방향제시
홍성진 외 (2015)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검토 및 시사점	○ 대북 건설공사 유경험자 면담조사 ○ 북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향후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분야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북한 SOC 구축 지원을 위한 전략수립> 1차 연도(2014)에서는 북한에 구축되어 있는 SOC 시설물과 국내외 기관들의 북한 지원전략을 분석하고, 2차 연도(2015)에서는 북한 공간정보 활용 방안 분석, SOC별 구축지원체계 및 시나리오 작성, 시범연구지역 선정 및 상세 시나리오를 작성
- 각 부처·기관별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시스템을 고려한 전략 수립
  - (정보 부문) 국토부 북한 통합 SOC정보시스템, 통일부 정보시스템
  - (건설용어정비 부문) 국토부 북한 건설·개발 제도 및 계획 현황 연구
  - (인력·장비 부문) 국토부 북한 장비·인력 활용 및 정책 연구
- 북한 인프라 및 국토 개발
  - (사회간접자본)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도로 인프라 구축
  - (경제특구 개발 및 물류인프라) 동북아 물류 흐름 및 중국 등 주변국의 물동량 변화 반영하여 개발
  - (환경, 에너지, 재난안전 등) 부처별 추진 내용 연계
- 기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활동 모니터링 및 협업 추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유라시아철도연합, 남북발전 연구회, 경기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등)



### Ⅲ. 전기공사

- 북한 송전계통은 66kV, 100kV, 220kV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음
  - 220kV 및 110kV 송전선로는 지역 간 전력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간선계통, 110kV 계통은 함경남도과 함경북도 일부에만 포설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의 간선망은 220kV 송전망으로 구성
  - 66kV 계통은 지역 내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송전망으로서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특히 부하밀도가 높은 평양시와 평안남도에 밀집되어 있음
  
- 북한의 전기기기 제조기술 수준
  -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있는 전선, 애자(insulator), 중소형 발전기, 전동기와 변압기 등은 (구)소련 및 체코 등의 기술 협조로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 대용량 발전기, 변전기기, 전력전자기기와 자동화 관련기기 부문은 기초 소재 및 반도체 관련 기술이 미흡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남북한 전기발전설비 격차는 동독과 서독 통일 전 발전설비 격차와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이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전망(전기신문, 2016)
  -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25만 3,000kW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용량인 9,321만 6,000kW에 비해 1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남(국가통계포털, 2016)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전체 소비전력(가정용, 산업용, 공공 및 상업용 합산)전력은 10,191kW, OECD국가 평균은 8,230kW, 세계평균은 2,930kW, 북한의 1인당 전체 소비전력은 880kW로 파악됨
- 북한의 1인당 소비전력을 우리나라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100 만 kW급 화력발전소 26기, 140만 kW급 원자력발전 8기가 필요
  - 화력발전과 원 전 2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비용이 각각 2조 7,000억 원, 7조 100억 원이 든다고 가정하면 화력 26기와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데는 총 63조 1,400억 원 필요
  - 우리나라 1인당 소비전력이 세계평균의 약 3.4배에 달하기 때문에 세계평균 수준으로 북한의 1인당 소비전력을 끌어올리려면 15조 1,100억 원 소요

□ 개성공단 전력 지원

- 개성공단 경협 사업에 전력 인프라 공급
- 1차적으로 시범 단지에 대해 22.9kV 배전망을 건설하여 운영
- 2007년 154kV 평화변전소와 송전망을 건설, 1단계 공단 지역에 공급

□ 전기공사업계 통일 대비 연구

- 통일에 대비한 전기공사업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북한의 전력산업 현황을 분석하거나 통일 대비 전력수요를 추정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전기업체가 준비할 수 있는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표 2〉 참조)



[표 2] 전기공사업계 통일대비 연구

저자 정보	제목	주요 내용
한국전기연구원 (2012)	독일 전력산업 통합분석	○ 통일 전후 독일 전력산업 구조와 현황 조사
한국전기연구원 (2013)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전력공급상관관계 분석	○ 회귀분석 이용, 남북한 발전량 대비 GNI 상관관계 분석
홍순직 (2015)	북한의 전력난 현황과 남북협력방안	○ 북한전력수요전망 ○ 장단기 남북한 전기협력방안
윤재영 (2016)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 북한현황 및 독일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 공통적으로 전기공사업 관련 북한연구에서는 남북한 관계와는 별개로 전기공사업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전력산업에 대한 심층연구의 필요성 및 통일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통일 대비 전기 인프라 통합방향

- 남북한 장단기 협력(홍순직, 2015)
  - 단기적으로는 발전가동률 제공에 초점을 두고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발전능력 확충에 노력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공급능력 확충과 남북한 전력 계통망 연결 및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추진
- 남북 전력통일 추진(이상만, 2015)
  - 1단계: (민간중심, 정부협업) 민간중심 전기용어 통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시공기준 통일, 남북 기술교류 및 기술자 교류양성

- 2단계: (정부주도, 민간협업)
  - (정부) 발전 송전 배전 계통 설비 개보수, 발전연료 지원 및 에너지 절약형 설비로 교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정책 수립
  - (민간)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한 마이크로 그리드 시범구축 및 지원, 북한전력 마이크로 그리드 전문가 그룹 및 인력양성
- 3단계: (남북한 정부주도, 민간협업):
  - (정부) 직접적인 전력공급 지원, 신규발전소 지원,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 (민간) 마이크로그리드 연동 스마트 그리드 거점 도시화 구축 및 지원, 스마트 그리드 거점 도시 간 남한 계통 연계지원

## IV.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
  - 2001년 한국통신, 기가링크, 비트컴퓨터, 우암닷컴 등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협력사업을 추진함
  - 2005년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계기로 통신망 구축을 위한 남북 기술진의 공동작업이 성사됨
  - 2005년 7월 문산-개성 간 직통 광케이블이 연결되고, 남북 광전송망 및 IP망이 개통됨



[표 3] 민간차원의 남북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2001)

업체	대상자	사업 내용	사업시기
기가링크	평양정보센터 (민경련)	평양정보센터 내에 초고속망 시범사이트 구축 추진 T-LAN 장비 및 부속 네트워크 장비 무상제공	2001.2
우암닷컴	평양정보센터 (민경련)	영상 관련 S/W 공동개발 및 사이버 영상면회 시스템 구축추진 영상소프트웨어, 헤드셋 무료제공	2001. 2
한국통신	조선체신회사	남북 기간 통신망 구축, 남북 전화 통신 사업 통신설비지원사업	2001. 4
비트컴퓨터	조선컴퓨터 센터	조선 컴퓨터센터와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중계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연락망인 비트하라인 구축 합의	2001. 6

출처 : 이해정(2009)

□ 정보통신공사업체 북한 진출

○ (2014년)

- 총 15건의 공사실적, 총 기성액은 약 16억 5,000만원에 달함
- 원격제어 및 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포함)설비가 6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종별 기성액 규모로도 약 2억 2,5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015년)

- 총 19건의 공사실적, 총 기성액은 약 62억 3,000만원에 달함
- CCTV설비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공종별 기성액 규모로는 기타  
교환시설설비 공사가 2억 2,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표 4] 정보통신공사업체 북한진출 현황(2014~2015)

연도	공종명	당년도기성액(천원)
2014	방송설비	4,187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공사	15,495
	기타 교환설비공사	880
	원격조정 및 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포함)설비	4,550
	원격조정 및 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포함)설비	1,430
	원격조정 및 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포함)설비	2,807
	원격조정 및 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포함)설비	3,083
	구내전송선로설비	105,600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인입관로, 통신케이블포함)	2,100
	키폰전화설비	1,650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설비	2,420
	경비보안설비	7,788
	원격조정 및 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포함)설비	6,880
	원격조정 및 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포함)설비	3,742
키폰전화설비	2,312	
2015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공사	41,472
	원격조정 및 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포함)설비	134,970
	광통신케이블설비	23,540
	방법설비	2,350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설비	2,500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설비	13,200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설비	2,990
	기타 구내통신설비공사	9,500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설비	6,050
	방송설비	34,500
	기타 구내통신설비공사	24,500
	방송설비	34,500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설비	2,700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설비	2,970
	기타 교환설비공사	222,000
	전화설비	32,558
	전화설비	17,750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공사	10,724	
영상·음향설비	4,175	

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공사신고업체, 발주업체, 원도급업체 명 미공개



## V. 정보통신공사 관련 시사점

### □ 건설공사 북한 진출

- 통일 이후 북한에서 생산 및 물류거점 및 SOC 시설 구축, 신규주택건설 등 건설공사 수요가 발생할 것이므로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동반 진출을 예상할 수 있음
- 북한에서 발생할 건설 프로젝트의 업무수행을 위해 공사업 전문인력의 공급과 북한 현지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과 제도적 지원체제 도입을 준비하여야 하며, 건설 분야와 동반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전기공사 북한 진출

- 정보통신 분야의 범위와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전기공사업에서도 정보통신공사와 융·복합되는 공종과 기술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북한 지역 전력 현대화에 있어서도 빅데이터, 스마트 그리드 등 미래 전력 ICT 융합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전기공사업계에서도 남북한 전력 인프라 통합에서 스마트 그리드 등 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이 민관협업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어(이상만, 2015), 통일 이후 전력통합사업에서 전문성과 시공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음

□ 정보통신공사 북한 진출

- 북한시장 진출을 통해 남한에 한정된 정보통신공사 수요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공사업체에 새로운 사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
- 정보통신공사와 연결되어 있는 건설공사·전기공사의 경우, 북한시장 진출을 바탕으로 시장선점과 장기적 수익기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체는 북한 진출경험을 축적한 관련 공사 분야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사업기회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통신·건설·전기 등 다양한 업역과 연관되어 있는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상 통일 이전에 공사업체가 단독으로 북한에 진출하기는 어렵다는 제약이 있음
- 따라서 통일 이전에는 그간 협력업체와 더불어 개성공단 등에서 쌓아온 공사경험을 활용하여 북한 정보통신공사시장에 대해 간접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통일 이후에는 공사업체가 북한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시공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VI. 참고 문헌

- [1] 박용석(2010). 남북한 건설 분야 협력사례 분석과 북한 내 산업단지 개발방안.
- [2] 박용석(2012). 북한 경제 및 건설시장에 관한 기초연구, 건설산업연구원.
- [3] 박용석(2014).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동향 및 시사점, 건설산업연구원.
- [4] 윤재영(2016).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KDI 북한경제리뷰>, 2016. 5, 제18권 5호, 한국개발연구원.



- [5] 이상만(2015). 통일에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 국회신성장산업포럼: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 2015. 11. 5.
- [6] 이해정(2009). 북한의 인터넷 현황과 남북한 IT협력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 [7] 전기신문(2015. 12. 9). “북한철도개량, 얼마나 들까?” Retrieved from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449645450129664016>
- [8] 전기신문(2016. 4. 11). “북한 전력계통 및 산업현황,” Retrieved from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459941501132914015>
- [9]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tat.go.kr>
- [10] 한국전기연구원(2012). 독일 전력산업 통합분석.
- [11] 한국전기연구원(2013).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전력공급 상관관계 분석.
- [12] 허준행(2015). 북한 인프라의 구축 및 관리기술 개발 전략, 그랜드코리아  
인프라구축 심포지엄 발표자료, 대한토목학회, 2015. 5. 7.
- [13] 홍성진 외(2015).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검토 및 시사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14] 홍순직(2015). 북한의 전력난 현황과 남북협력방안, <통일경제>, 제1호,  
36-46.

##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변동 추이

### I.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개요

- 정보통신 공사비지수(2010=100)는 과거 수행한 시설공사의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의 물가변동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중노임단가, 생산자물가지수 등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가공통계이다.
- 해당 지수는 공사의 형태에 따라 총 11개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표준시장단가(구 실적단가)에 최근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 시설공사비 변동추이 파악에 활용된다.
- 공사비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므로 1개월 늦게 산정·발표되며, 본 동향에서는 ‘16년도 6월과 7월 지수 동향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 2016년 8월 → 2016년 7월 지수(잠정치) 발표

### II.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동향

#### □ ‘16년도 6월 ~ 7월 공사비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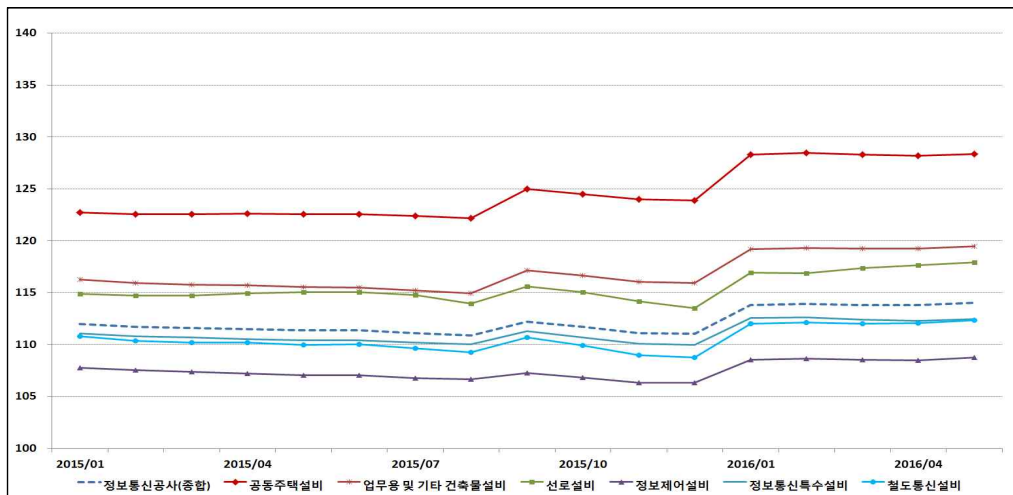
- ‘16년도 6월 종합지수는 114.08로 전월대비 0.06% 상승하였으며, 7월은 113.85(잠정치)를 나타내며 0.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하위 6개 분류체계의 공사비지수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영향으로 일부 분야에서 지수의 상승이 나타났다.
- 6월과 7월은 시중노임단가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노무비 변동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표 1] '16년 6월~7월 지수 및 전월 대비 변동률

분 류 체 계	6월		7월	
	지수	변동률(%)	지수	변동률(%)
정보통신 공사비지수(종합)	114.08	0.06	113.85	-0.20
구내통신시설	123.42	0.01	123.29	-0.11
공동주택설비	128.34	-0.02	128.23	-0.09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설비	119.49	0.03	119.35	-0.12
선로시설	117.83	-0.08	117.82	-0.01
선로설비	117.83	-0.08	117.82	-0.01
정보통신시스템시설	110.21	0.09	109.92	-0.26
정보제어설비	108.89	0.15	108.61	-0.26
정보통신특수설비 (교환, 전송, 항공, 선박 등)	112.48	0.03	112.16	-0.28
철도통신시설	112.45	0.11	112.17	-0.25
철도통신설비	112.45	0.11	112.17	-0.25

※ '16년 7월 공사비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16년 8월 지수 공표시 확정됨



[그림 1]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변동 추이('15년 1월~'16년 7월)

### Ⅲ. 시사점

#### □ 공사비지수 변동 요인

- '16년 6월 종합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0.2%) 영향으로 일부 최하위 분류체계 지수가 상승을 기록함
  - 상승 분류체계
    - 정보제어설비(0.15%), 철도통신설비(0.11%), 업무용 및 기타 건축물설비(0.03), 정보통신특수설비(0.03%)
  - 하락 분류체계
    - 선로설비(-0.08%), 공동주택설비(-0.02)
  - ※ 석탄 및 석유제품(4.4%)과 제1차 금속제품(2.1%) 등의 품목 가격이 상승한 반면, 화학제품(-0.6%), 전기 및 전자기기(-0.1%) 등의 가격이 하락하여 일부 분야의 지수가 하락세를 기록하였음
  
- 7월 종합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 품목 중 석탄 및 석유제품(-2.6%), 전기 및 전자기기(-0.6%), 화학제품(-0.1%) 등의 가격하락 영향으로 모든 분야의 공사비지수가 하락하였음
  - 정보통신특수설비(-0.28%), 정보제어설비(-0.26%), 철도통신설비(-0.25%),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설비(-0.12%), 공동주택설비(-0.09%), 선로설비(-0.01%)
  - ※ 예폭시인쇄회로기판(-54.97%), LCD용백라이트유니트(16.18), 철강절단품(-7.25) 등의 품목이 종합지수 하락에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통신산업연구원 동향

###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원장 임주환)은 2016.7.6.일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6-75호에서 ‘공무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 위탁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따라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업 공무원가 산정기준 관련 업무나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연구업무 등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연구업무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b>고 시</b>
<p>●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5호</p> <p>「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5-26호, 2015. 3.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p> <p>2016년 7월 6일</p> <p style="text-align: center;">미래창조과학부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p> <p>「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공무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 위탁기관 :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p>

◆ **임주환원장, '표준품셈 적용해 건전한 ICT생태계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전자신문에 기고**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임주환원장은 2016.8.12.일자 전자신문에 '표준품셈 적용해 건전한 ICT생태계 만들자'라는 주제의 기고에서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의 실질적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들로 민간발주의 경우 현재는 표준품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발주가 이루어지므로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회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C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동반성장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자신문 | etnews**

**[기고]표준품셈 적용해 건전한 ICT 생태계 만들자**

지난해 12월 정보통신공사법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이한 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적정한 정보통신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점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유무선 통신장비 등 정보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영세한 정보통신공사 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여러 산업과 콘텐츠가 융·복합화돼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창출되고 경제 발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정보통신공사 업체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앞으로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

출처 : 전자신문(2016. 08. 12)

<http://www.etnews.com/20160811000372>





## ◆ 임주환원장, '기본료 폐지 논쟁, 시장 자율경쟁이 해답이다'라는 내용으로 매일경제에 기고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임주환원장은 2016년7월7일자 '기본료 폐지 논쟁, 시장 자율경쟁이 해답이다'라는 주제로 한 매일경제에 기고에서 기본료는 망 투자 및 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투자비, 유지·보수비 등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체계중 하나이며, 통신산업의 특성상 5G등 진화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통신요금인하나 기본료 폐지 주장은 산업진흥이나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문제 등 통신품질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결국 시장의 자율경쟁으로 풀어가야할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 [이슈토론]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 ◆ 반대 /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5G 등 신규투자 저해하고 휴대폰 가격 상승도 우려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솔깃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포퓰리즘적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기본료를 없애자는 주장의 핵심은 이동통신 3사가 통신비를 인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투자가 끝났으니 이를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기본료는 폐지해도 된다`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이통 3사가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보면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이하 생략)

매일경제(2016. 7. 7)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485514>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6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수주교섭지원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원장 임주환)은 '16년 시범적 공모를 통하여 올해 해외진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해외진출 역량을 보유한 6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발굴하여 기업당 1천만원씩 총 50:50 매칭펀드 형태로 6개 기업에 총 6천만원을 지원하였다. '16년 수주교섭지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들 지원한 기업을 통하여 올해안에 MOU(양해각서)등 가시적인 성과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성과가 예상되고 있다.

구분	기업명	대표자	발주국	프로젝트명	비고 (분야)
1	(주)동남 이앤에스	김학철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국경의 CCTV 경계 시스템설치 시범사업	전통공사업
2	(주)지앤에스 기술	문창수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위성망 구축사업	전통공사업
3	(주)안세기술	이용안	미얀마	Marga Global Telecom을 위한 통신망 구축 컨설팅	엔지니어링
4	(주)성일통신	서성열	필리핀	홈런(Homerun) FTTH 프로젝트	전통공사업
5	(주)문엔지니어링	문헌일	스리랑카	콜롬보 버스정보안내 시스템구축 사업	엔지니어링
6	(주)도담 시스템스	이의동	인도	잠무 전방지역 통합국경 통제시스템	융합



◆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연구 W/G Kick-Off Workshop’ 회의 개최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는 ‘16년 08월 19일 ~ 20일 양일에 걸쳐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연구를 위한 ‘Working Group Kick-Off Workshop’ 회의를 개최하였다.
- 총 4개 분과 16명으로 구성된 W/G은 엔지니어링 실무인력으로 구성되었으며,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의견 수렴과 서술 방향 등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 ‘16년도 TTA통신설비PG 정기회의 참석 및 하반기 과제 제안발표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는 16.8.17(수)에 총 4건의 2016년 하반기 정보통신단체표준 과제제안은 완료하였고 16.8.24(수)에 통신설비PG216 정기회의 참석 및 과제 제안발표를 수행하였다.
- 발표는 우리 연구원에서 제안하였던 표준(안)의 목적, 적용범위, 주요내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표준(안)의 요약설명 등으로 향후 PG위원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내용보완 및 협의를 통해 하반기 표준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16년도 하반기 정보통신단체표준 추진 표준(안) 〉

- ① 정보통신 기반 정보망설비 공사 표준시방서(Standardized Specification for the Information Network Facilities based on ICT Technology)
- ② 정보통신 기반 정보매체 설비 공사 표준시방서(Standardized Specification for the Media Information Facilities based on ICT Technology)
- ③ 근거리통신망 설비의 설치 방법(Installation Method of Local Area Network Facilities)
- ④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방법(Installation Method of Integrated Reception System)

**정보통신산업동향** 제13권 (2016. 9)

---

발행일 2016년 9월 2일

발행인 문창수

편집인 임주환

발행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12번길 80

TEL (031)231-3400 FAX :

(031)269-5210

<http://www.kici.re.kr>

---